

총장 선출 제도 관련 직원 전체 설문조사

☞ 설문 기간: 2020년 7월 8일(수)~9일(목)

☞ 설문 대상: 직원

☞ 설문 방법: 인터넷(google)

선후배, 동료 직원 동지 여러분, 지난 6월 24일 이사장 간담회(내용 공지 참고: 포털 게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법인에서는 현행 총장 선출 제도(교수회 주관, 직원 참여)를 이사회 주관의 후보자 심의 간선제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인과 교수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총장선출제도 상반된 주장에 대해 실제 총장선출에 참여하고 있는 직원사회는 이를 외면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노동조합 및 직원사회가 입장을 세우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노동조합 및 직원 전체가 결의를 모을 수 있는 단계의 장으로 나아가길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바쁜 업무로 번거로우시겠지만 직원사회의 권익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신중하시되 기탄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응답자 보호를 위해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설문이 종료되는 대로 결과를 최대한 빨리 여러분께 공유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020. 7. 7.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위원장 이철환

〈참고: 교수회 주관 총장직선제 개요〉

1. 총장직선제 시행 경과: 제5대(1994년) ~ 제12대(현재) 선출
2. 직원 참여 경과
▷제9대 선거(2005년/1차: 13%, 2차: 7%) ~ 12대 선거(2018년/1차: 18%, 2차: 10%)
3. 참여 방법: 교수회와 협의를 통한 직원 참여 비율 확정 후 직접, 무기명 투표
4. 관련 규정 및 협약: 교수회 규정, 단체협약

[교수회 규정] 제6조 (권한) ② 전체교수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2. 법인이사회에 추천할 총장 후보의 선출

[단체협약서] 제28조 (총장후보선출) 총장선출 방식의 결정은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재단의 고유 권한임을 인정한다. 단, 총장후보를 추천하거나, 총장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를 할 때에는 민주적인 원칙과 협의에 따라 직원이 참여한다.

☞ 작성 방법: 해당 문항에 대해 체크하시고 기타 의견은 편안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1. 법인에서 현행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려는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교수회 주관, 직원 참여의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1-1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 법인 주관 및 심사,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1-2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1-1. 현행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직원 참여율이 조정되어야 한다.

나. 교수, 직원 외의 대학구성원도 참여해야 한다.

다. 기타 의견 및 제안: _____

1-2. 법인 주도의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면, 가장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나. 법인의 일방적 영향력이 저지되어야 한다.

다. 기타 의견 및 제안: _____

2. 총장선출 현행 제도에 대한 간선제 계획이 제기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 현행 제도의 한계 및 폐단에서 비롯됐다.

나. 현행 제도상 문제보다는 선출된 총장의 대학경영 능력에서 비롯됐다.

다. 기타 의견 및 제안: _____

3. 학원 정상화 1년이 지났습니다. 현재까지 법인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대학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나. 대학 발전의 기여도가 정상화 이전과 차이가 없다.

다. 정상화 이전의 대학 발전 기여도보다 못하다.

4. 기타 의견 및 제안: _____

제17대 노동조합은 본 설문결과를 총장선출제도에 대한 직원사회의 입장을 세우는 밑바탕 의견으로 수렴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사회에서 총의가 민주적으로 원활하게 성립·결의되면 노동조합은 이를 명령으로 받들어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쟁취하는 제17대 대구대학교 노동조합

<https://union.daegu.ac.kr>